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4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 
제2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9월 4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셔틀버스의 운영 및 이용대상자, 이용료, 운행범위, 운행시간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### 나. 검토의견

## 1) 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여 이용의 편리성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 2) 주요 내용

### 가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- 공공시설 및 셔틀버스에 대한 본 조례상의 정의를 규정함

### 나) 셔틀버스 운용을 규정함(안 제3조)

- 셔틀버스 운영을 필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예산 지원 등을 명시함

### 다) 이용대상자(안 제4조)

- 보건소, 자치회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이용 대상자 및 교통약자를 셔틀버스 이용 대상으로 규정함

### 라) 이용료 무료(안 제5조)

- 셔틀버스 이용료가 무료임을 명시하였고, 공익성을 중심으로 교통약자 등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### 마) 운행범위 및 운행시간(안 제6조, 제7조)

- 운행범위 : 셔틀버스가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는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

- 셔틀버스 운영 대수와 노선 지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구간을 최소화하여 운수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요구될 것임

- 운행시간 :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, 운행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로 규정함

### 3) 검토 의견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교통 및 이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로 볼 수 있으며,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공익성에 부합되는 교통서비스 정책은 타당하고 필요하다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주어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으로 보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